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이 **행복**하면 **모든세대**가 **행복**합니다.”

예방 홍보사업
실시, 언론홍보,
민 사저전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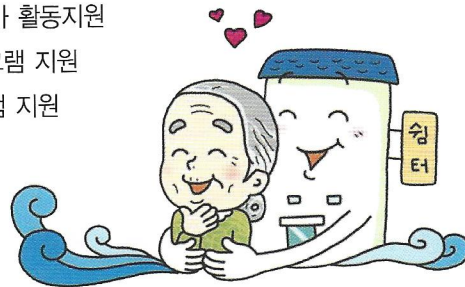
홍보

교육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입소대상 :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기간 : 4개월(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서비스내용
 - 법률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지원
 - 학대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의식주 등 쉼터 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지원
 -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퇴소(최대 6개월)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양로시설(52개소)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 육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 흥분,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대소변 냄새, 땀,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됨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자기방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Q1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Q2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3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있나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업무를 방해한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학대사례의 경우 최근 5년간 **25.0% 증가**(‘12년: 3,424건 → ‘16년: 4,280건)하였습니다. 이는 가정내 학대가 상당수이며 또한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내 학대 추이: (‘12년) 2,909건(85%) → (‘16년) 3,799건(88.8%)

생활시설 학대 추이: (‘12년) 216건(6.3%) → (‘16년) 238건(5.6%)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 요양병원 믿고 부모 모셨는데.. 기한 지난 빵, 쌀자루엔 쥐똥 <중앙일보 2017.5.25.>
- 노인학대 대부분 ‘정서적 학대’가 차지...경찰 노인학대 신고기간 운영 <국제신문 2017.6.13.>
- “그래도 내 자식” 학대당해도 쉬쉬하는 노인들 <동양일보 2017.6.14.>
- 노인간 ‘노(老)-노(老) 학대’ 증가세...정부 노인학대·보호 인프라 확충 <아시아투데이 2017.6.14.>
- OO요양시설 치매노인 학대사건 발생 <매일신문 2017.9.23.>
- “방치된 인권, 요양병원 11곳 노인 학대” <데일리메디 2017.10.30.>

노인학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1조의2제4호>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1577-1389** 또는 **110**



보건복지부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